

금융피해 예방요령 안내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는 10가지 행동지침)



주의 : 경고의 신호를 살펴라

자본시장과 소비자보호제도가 잘 발달된 미국에서도 거의 매일 금융사기나 금융피해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CFP® 자격인증기관인 CFP Board가 2009년도에 미국의 CFP 자격인증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설문응답자 중 60%가 금융사기나 피해를 경험한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다고 한다.
- ▶ 금융사기나 비윤리적인 행위의 피해자는 주로 61세 이상의 고령자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금융고객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 ▶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 ▶ 어디서 조언을 구해야 하는가?
- ▶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의 신호는 무엇인가?

한국FPSB(FPSB Korea)는 미국의 CFP Board가 미국의 금융사고 유형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주의해야 하는 경고의 신호를 정리하여 2010년도에 발간한 “금융소비자의 자기보호지침(Consumer Guide to Financial Self-Defense)”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금융사기를 피할 수 있는 10가지 행동지침을 소개하는 “금융피해 예방요령 안내”를 발행하게 되었다.

금융피해 예방요령 안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다.

- ▶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의 정리
- ▶ 금융사기나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대한 경고신호의 파악
- ▶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해야 하는 조치

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는 예금, 펀드, 보험, 증권 등의 금융거래나 부동산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기타의 거래 또는 투자 권유자 (이하 포괄적으로 “금융종사자”라고 함)에 대하여는 먼저 유효한 “CFP 자격인증자” 또는 “AFPK 자격인증자”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CFP 자격인증자” 또는 “AFPK 자격인증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금융피해 예방요령 안내

01 금융종사자 또는 권유자의 전문자격을 확인한다.

고객의 이익보다 금융기관 또는 금융종사자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이 많다.

예금, 펀드, 보험, 증권 등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 받았을 때, 권유자가 친척 또는 지인인 경우에는 '아는 사람인데 잘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명함이나 자격증을 제시하면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맹목적인 신뢰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권유자가 친척이나 지인 또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자문과 도움을 제대로 받길 원한다면 이 사람이 재무설계사 또는 기타 금융전문가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전문지식과 충분한 실무경험 및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자격의 인증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행동지침

- 1) 비행기에 탑승할 때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검색을 하듯이 명함에 명시된 자격은 그 자격을 인증하고 감독하는 발급기관에 문의하거나 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서 권유자의 해당 전문자격이 사실이며 유효한지를 확인한다.
 - CFP 또는 AFPK 자격인증자의 경우에는 한국FPSB의 홈페이지 (www.fpsbkorea.org)의 '자격인증자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금융상품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권유자가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소한의 전문능력과 직업윤리를 갖추고 있는지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 (1) 해당금융업무의 전문자격자로서 관련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을 잘 갖추고 있는가?
 - (2) 자신의 이익보다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설계방안이나 재무설계방안 또는 금융거래방안을 제시하는가?
 - (3) 투자계획이나 금융상품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미리 알려주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가?

금융피해 예방요령 안내

02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서류작성을 금융종사자에게 일임하면 자칫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투자 설명확인서를 읽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험상품가입 시 청약서상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서와 계약서를 읽고 작성하는 일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귀찮게 생각된다. 금융종사자가 시간절약이나 또는 고객편의라는 명분으로 상품의 특성과 위험을 고객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문서를 대신 작성한 후에 고객에게 서명만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고객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금융종사자가 필요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였을 경우, 허위정보를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금융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또한 고객이 서류상에 빈칸을 남겨둔 채 서명하고 난 다음 나머지를 금융종사자에게 일임한다면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행동지침

- 1) 계약관련 서류의 내용이나 상품에 관한 설명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 될 때까지 금융종사자에게 설명해 달라고 한다.
- 2) 계약서나 청약서는 빈칸 없이 모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복사본을 받아 보관한다.
- 3) 투자 또는 재무설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금융종사자의 전문적인 소견을 참조한 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특히, 시간이 없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금융종사자에게 결정권을 일임하지 않는다.
- 4) 금융종사자가 제안한 제안서나 투자전략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도 평가를 받아 비교해 보도록 한다.
- 5)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친척 또는 다른 전문가와 상의해 보도록 한다.
- 6)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 7)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확인서를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 금융종사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금을 제 때에 수령하기 위하여서는 고객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금융피해 예방요령 안내

02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 8) 금융투자상품에 가입, 해지 또는 중도 인출하는 경우, 고객본인이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금융종사자에게 맡길 경우에는 고객본인이 보는 앞에서 날인하도록 한다.
- 9) 특히, 고령자가 여러 개의 금융투자에 대하여 통장갱신, 생활비 총당, 예금 입금, 현금인출 등 여러 건의 거래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일 처리 후 그 자리에서 통장의 갯수, 통장별 잔고 및 현금수령액 등을 다시 한번 대조하고 확인한다. 또한, 금융기관별 보유통장과 계좌별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통장과 대조한다.

피해사례

- 1) 은행의 CD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70세 된 고객이 이자율이 더 높은 금융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은행을 찾았다. 은행직원은 기존에 가입한 CD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은 연금상품을 고객에게 소개하였고 고객은 은행직원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였다.
하지만 1년 후 고객이 요양원 입원에 필요한 목돈을 출금하고자 하였을 때, 이 연금상품은 10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높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 2) 금융종사자가 고객의 보험 청약서를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최근 3개월 동안의 병원 치료 사실과 음주운전 등 알코올 남용에 대한 병력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3년 후 고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족들이 사망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병력과 음주운전사고 여부에 대한 기재가 허위였음을 주장하며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3) 75세의 고객이 여러 건의 정기에금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할 곳이 많아 담당 직원에게 대신 날인을 부탁하여 갱신 후 통장을 받아 왔다.
그러나, 며칠 후에 고객은 통장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은행에 갱신된 통장을 찾으러 갔으나 그 통장의 정기에금은 갱신되지 않고 고객이 현금으로 인출해 간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금융피해 예방요령 안내

03 투자 자산이 금융기관의 관리와 감독하에 제대로 운용되는지 확인한다.

고객의 자금을 유용하는 금융종사자도 있다.

금융투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관리와 감독하에 운영되며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에 내재된 위험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고객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후 금융기관의 보고서를 직접 받지 못하고 금융종사자가 제공하는 보고서만 받는다면 금융사기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해당금융기관에 투자보고서를 요청하여 금융종사자가 제공한 투자보고서와 비교하여야 한다.

행동지침

- 1) 권유 받은 금융투자상품이 합법적인 금융기관의 관리와 감독하에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 2) 금융종사자가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리스크가 큰 사모펀드를 권유한다면 거래점포를 바꾸거나 금융기관을 옮기도록 한다.
- 3) 투자보고서를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직접 e-mail 또는 우편으로 받도록 한다.

피해사례

- 1) 금융종사자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금융기관과는 관계가 없는 사모펀드를 판매하였다. 이 거래에서 고객이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사모펀드가 금융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금융상품인 관계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 2) 71세의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위해 금융종사자가 법인계좌라고 알려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후 이 고객은 자산수탁기관으로부터 잔고나 투자성과에 대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하고 오직 전담 금융종사자의 보고서만 받고 있었다. 나중에 고객은 해당 금융종사자가 고객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기죄로 구속되었음을 알았다.

금융피해 예방요령 안내

04 투자자금은 금융종사자의 개인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고객의 투자자금을 금융종사자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제도권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자금을 직원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접수하지 않는다.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투자자금을 금융기관의 법인계좌가 아닌 금융종사자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다면, 이 금융종사자의 행동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사기로 연결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종사자가 고객의 투자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행동지침

- 1) 보험료나 상품에 대한 투자자금은 직접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고,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도 금융종사자의 소속회사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 2) 금융종사자에게 투자자금을 맡기거나 또는 투자중인 자금을 금융종사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인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3) 금융종사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고객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점포를 바꾸거나 금융기관을 옮기도록 한다.

피해사례

- 1) 금융종사자가 고객의 투자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고객에게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허위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 2) 금융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료 선납제도를 안내하고 고객이 납입한 선납보험료를 개인용으로 유용하였다. 고객은 나중에 선납보험료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금융종사자가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유용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05 삶의 전환기 또는 시련기에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결정하라.

고객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

배우자의 사망, 이혼소송, 사업실패 등과 같은 인생의 시련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비윤리적인 금융 종사자는 고객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의 이익보다 할당된 영업목표 달성이나 보너스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삶의 전환기 또는 시련기에는 투자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결정하도록 한다.

행동지침

- 1) 인생의 전환기 또는 시련기에는 금융상품 가입이나 투자 권유에 주의하고, 중요한 결정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결정한다.
- 2) 마감일이 촉박한 상속신고나 상속세 자금조달 및 상속재산의 운영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믿을 만한 가족, 친구 또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피해사례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전업주부 A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남편이 거래하던 금융종사자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A씨를 방문하여 A씨가 자녀교육과 생활비로 현금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영업실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원금보장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후 사망 보험금 전액을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나중에 A씨는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필요하여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만기 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중도 해약할 경우 큰 손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06 금융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장점만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없다.

투자의 기본원칙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다. 투자에 따르는 위험 없이 고수익만을 보장해 주는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금융투자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행동지침

- 1) 투자상품의 설명서를 받아서 자세히 읽고 검토해 본다.
- 2) 금융종사자가 펀드, 보험, 연금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제안하고 권유할 때, 그 제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금융종사자가 제시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도 확인한 후 해당 상품의 가입을 결정하여야 한다.

피해사례

퇴직자가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생활비로 일정한 현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한 금융종사자는 중도 해약 시 높은 위약금과 투자대상의 제한이 있어 대부분의 정년퇴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변액연금상품을 정년퇴직이 가까워 오거나 이미 정년퇴직을 한 사람에게 재무계획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고 사망 보험금의 지급과 높은 수익률 등의 장점만을 설명하고 판매하였다.

07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교체를 자주 권유하는 금융종사자는 일단 의심의 대상이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적인 금융종사자는 고객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략이나 투자계획에 대해 고민한 후에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투자상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유하지만, 비윤리적인 금융종사자는 고객의 재무목표와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커미션이나 수수료만을 위해 일한다.

비윤리적인 금융종사자는 금융투자상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본인의 수수료 수입을 위하여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하거나 가입한 연금상품의 해약위약금 부과기간이 끝나자마자 더 유리한 상품이 나왔다고 하면서 새로운 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직장을 옮길 때에도 자신의 영업실적을 위하여 새로운 투자 상품이나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철저히 비교 분석한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행동지침

금융상품 교체거래를 권유 받았을 경우에는 이 거래에 따른 비과세혜택의 지속여부, 해약위약금, 수수료, 커미션 및 기타 거래비용을 포함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금융종사자에게 자세히 물어 보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비교해 보아야 한다.

피해사례

가입한 보험상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금융종사자가 더 좋은 상품으로 대체할 것을 권유하며, 대체에 따르는 비용 및 세금문제도 전혀 없다는 설명을 믿고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였다. 하지만 이 대체거래로 금융종사자는 약 800만원의 비공개 커미션을 받았지만 고객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긴 시간을 다시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08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나 거래의 권유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사기꾼이 노리는 것은 높은 수익율에 쉽게 흔들리는 고객의 마음이다.

시장의 수익율보다 훨씬 높은 투자수익률을 수치로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대부분 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확실한 투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기보다 빚을 내어서라도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챙기려 할 것이라는 점을 되새겨 본다면 결론은 분명하며, 고민할 필요도 없이 사기라고 보고 거절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하는 퇴직자에게 접근하여 그럴듯한 ‘창업 아이템’ 및 ‘고수익, 원금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므로 ‘수익보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투자는 일단 사기라고 보고 주의하여야 한다.

행동지침

- 1)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에 응하지 않도록 한다.
- 2) 개인적으로 투자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관련 근거자료를 문서로 받아서 내재된 위험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피해사례

최근 은퇴한 B씨는 앞으로의 생활비 조달을 고심하고 있던 중 정치권과 관련된 비자금용 채권을 담보로 하는 단기대출이라든가 IT, BIO 등의 고수익 사업에 대한 투자 시 최저 월 1%의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지인의 계속되는 권유에 따라 속는 셈치고 시험 삼아 퇴직금의 일부를 투자하였다. 매 달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월 1% 이상의 투자수익이 6개월 동안 어김없이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되자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퇴직금의 일부를 투자했다. 결국에는 다른 적절한 투자수단도 없던 차에 정말 좋은 투자라고 판단되어 나머지 퇴직금을 전액 투자하고 가까운 친구에게도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퇴직금을 투자했던 곳이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과 연루되어 유일한 노후자금인 퇴직금 전액을 손해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권유로 함께 투자한 친구로부터 피해보상을 요구 받고 있다.

참고사항▶ B씨가 1년 6개월간 수령한 월 1%의 투자수익은 투자원금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함. 따라서 사기꾼의 입장에서는 2~3년의 기간 동안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도 매우 수지맞는 거래일 것임.

09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신문광고의 유혹을 조심하라.

전화, 핸드폰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투자자 모집은 대부분 감언이설로 고객을 유혹하는 수단이다.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수익 또는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자금의 모집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전화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대출을 안내하거나 영업광고를 하지 않는다. 신문광고를 통하여 전화번호와 임야 등의 토지소유자를 제시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한다는 투자모집은 대개 활용도가 낮은 토지가 많다.

이메일로 외국의 전직 고위 정부관료나 군부실세 또는 그 부인이라고 하면서 스위스은행 등에 예치된 비밀자금이나 채권의 회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준다면 큰 금액으로 사례하겠으니 지정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은 사기로 보아야 한다.

행동지침

- 1) '000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명칭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고금리 사채로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신용카드나 예금계좌정보와 개인신상정보를 입수하여 금융 사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현금(체크)카드와 통장사본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상담과정에서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만 챙기고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 2)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기획부동산 등의 토지매입권유에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09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신문광고의 유혹을 조심하라.

피해사례

1) P씨는 고향에 갈 때마다 늘 지나다니던 수도권 인근지역을 유망한 투자지역이라 판단하여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 때, 고속전철과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투자가치가 매우 높아진 이 지역에 자신의 소유임야를 시가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분양하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시한 법무사가 분양대금 관리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책임진다는 신문광고를 보게 되었다. 광고주의 안내로 현장 답사를 마치고 마음에 드는 위치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토지활용을 위한 허가를 군청에 신청하였더니 자신이 매입한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급경사지였으며, 현장답사 때 안내를 받아 방문한 토지는 인근의 다른 지역이었다.

2) 정치가 불안정한 외국의 고위층 부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 최근 국외로 추방되어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 구속된 남편이 재직 중 축적하였던 거액의 해외 재산인 채권을 찾는 데 필요한 여행경비 등의 비용을 도와 달라는 요청과 함께 회수 후에 몇 배로 사례하겠다는 이메일을 받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 미화 2,000달러를 지정된 외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다.

10 보이스 피싱 등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조심하라

전화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자금이체를 요청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단 사기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먼저 해당금융기관이나 경찰 등에 신고한다

자금을 송금할 때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즉시 입금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 또는 금융기관이라고 사칭하는 전화요청에 따라 신용카드번호나 예금계좌번호 및 개인 신상정보를 알려주면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000만원의 돈을 보내라는 협박 공갈전화는 전화 받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게 되며 가족을 구하겠다는 급한 마음이 앞서 돈부터 송금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사기수법이다.

금융피해 예방요령 안내

10 보이스 피싱 등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조심하라

행동지침

1) 남의 돈이 실수로 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된 경우라도 은행에서 송금은행과 송금계좌번호를 확인한 다음 전화로 요청해온 입금은행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 직원과 상의한 후에 은행직원을 통하여 처리한다.

2) 전화로 검찰청, 경찰서, 금융감독원(금감원), 카드사, 우체국 등이라고 사칭하면서 예금이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전화금융사기라고 생각하고 응대하지 않는다.

입금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입금된 사실만 확인하고 돈을 이체하였거나 사기성 전화요청에 따라 본인의 금융정보와 신상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거래은행에 연락하여 자금이체의 취소를 비롯하여 본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예금지급정지와 ARS 카드론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3) 인질로 잡고 있다는 가족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000만원의 돈을 보내야만 풀어주겠다는 협박이나 공갈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가족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가족이 핸드폰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인질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가족의 핸드폰으로 직접 통화하여 인질상태가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돈부터 송금하지 말고 먼저 인질범의 요구사항을 경찰에 신고하고 인질사건 전문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도록 한다. 경찰 신고 없이 범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내주면 돈만 잃고 가족의 생명도 위험하게 된다. 왜냐 하면, 인질범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는 가족을 살려주면 자신이 체포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피해사례

1) A씨는 얼굴도 모르는 제3자로부터 실수로 A씨의 예금계좌로 1,500만원을 잘못 입금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급하게 지급할 돈이니 빨리 돌려 달라는 정중한 전화요청을 받고, 입금사실을 확인한 다음 제3자가 알려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 입금하였다는 1,500만원은, 제3자가 A씨의 신용카드로 ARS 신청을 통하여 카드론을 받도록 한 다음 A씨 계좌로 입금된 카드론을 가로챈 것이었다. 카드번호와 카드 뒷면의 CVC번호 및 비밀번호만 제대로 제시하면 손쉽게 카드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정보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A씨는 신용카드정보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유출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상태라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0 보이스 피싱 등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조심하라

피해사례

2) B씨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안설정을 구축하는데 필요하다는 전화요청에 따라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 사람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B씨의 신용카드 정보로 3,000만원의 ARS 카드를 받은 다음 다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카드론 대금 3,000만원을 범인들이 송금한 돈이니 회수하여야 한다고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한 다음 가로 채 버렸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유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3) 어느 월요일 아침 C씨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일본 OO대학 OO학과 O학년 유학중인 C씨의 딸을 일본 현지에서 인질로 잡고 있으며, 앞으로 1시간 내에 000만원을 송금하지 않거나 경찰에 알리면 딸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과 함께 “엄마! 나 살려줘”라고 울부짖는 딸의 목소리를 들려 주었다.

범인이 전화를 끊자 몸과 마음이 벌벌 떨리는 가운데 일본의 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고 또한 아침에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C씨는 범인의 무서운 협박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범인이 다시 전화상으로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독촉하면서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이제는 딸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계속하였다.

이에 C씨는 예금통장에 있는 돈을 긁어 모아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송금한 이후에는 범인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런 전화가 없었으며, 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속 일본의 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남편과도 연락이 안되어 걱정과 초조 속에 지내는 가운데 오후 늦게 되어서야 일본의 딸로부터 “엄마, 나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험준비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고 핸드폰을 꺼놓고 있었는데 왜 오늘 전화를 그렇게 자주 했어? 서울에 무슨 일 있어?”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는 전화가 왔다. 확인해 보니 C씨가 송금한 돈은 그 즉시로 인출되었으며, 찾을 길이 없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은 오늘도 월요일이라 출근하자마자 계속 중역회의와 간부회의 등으로 바쁘다고 하였다.

공부 잘하고 있는 유학중인 딸과 월요일 마다 회사 일이 바쁜 남편의 사정에 대한 정보를 밖에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랑 삼아 몇 번 이야기 한 것 밖에 없는 C씨는 범인이 딸과 남편 등 자신의 가족사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등골이 오싹하였다.

금융피해 예방요령 안내

유용한 사이트



금융관련 자격자 확인처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및 AFPK(재무설계사) 자격자
(T: 3276-7609, W: www.fpsbkorea.org)
- 생명보험협회 (T: 2262-6600, W: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T: 3702-8500, W: www.knia.or.kr/Family/fami_sale/agency/agency_search.asp)
- 금융투자협회
(T: 2003-9000, W: <http://finpro.kofia.or.kr/common/popup/UserSearch.html>)
- 여신금융협회
(T: 2011-0700, W: www.crefia.or.kr/inquiry/inquiry01.html)
- 전국은행연합회
(T: 3705-5000, W: <http://www.loanconsultant.or.kr/index.html>)



민원 제기처

- 금융종사자의 소속 회사
-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금융민원센터(W: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W: www.kca.go.kr)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T: 1577-0088, W: http://moc.krx.co.kr/m5/m5_1/UHPMOC05001.html)